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관

1993. 1.
1994. 1. 개정
2010. 7. 개정
2018. 2. 개정
2021. 1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독교적인 이념을 학문 및 사회, 문화에 구현할 수 있도록 기독교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기독교 계통의 대학을 후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고 학술진흥, 학술상 수상 및 건전한 문화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기독교학술연구 및 지원
2. 통합연구학회 운영 및 학술지 발간
3.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4. 워크숍 및 연구발표회 개최
5. 기독교 계통의 대학 후원
6. 소식지 발간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3. 이 법인의 목적사업은 공익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며,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 7 조 (회원의 종류)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
2. 준회원: 정회원이었으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연속 2년이상 이행하지 않은 회원
3. 학생 회원: 석사과정 이하의 과정에 재적 중인 회원
4. 기관 회원: 본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기독교 학교, 교회, 시민단체 등 기관

제 8조(명예이사장, 고문 및 자문위원)

1. 이 법인의 회원은 필요에 의하여 명예이사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명예이사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이 법인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① 이 법인의 세계관운동과 학회 활동에 참가
 - ② 이 법인의 각 지부 및 분과 활동에 참여
 - ③ 이 법인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 이용
 - ④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의원의 선출
 - ⑤ 이 법인의 정관의 준수와 제반 사역에 대한 성실한 참여
 - ⑥ 회비 납부
2. 준회원, 학생회원 및 기관회원은 위 4호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제 10 조 (회비)

1. 회비는 입회비 및 회비로 구분한다.
2.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며, 회비는 입회년도를 포함하여 매월 혹은 연 수회에 걸쳐 납부한다.
3.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1 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2 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이 법인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3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 사 10 인 (이사장 1인 포함)
감 사 2 인

제 13 조의 2 (선거운동의 제한) 이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16 조(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18 조 (부이사장의 직무)

1.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이사장 중 1인을 이사장의 직을 대행하도록 선출한다.
3.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 19 조 (회장)

1. 이 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회장(단수 또는 복수)을 선임할 수 있다.
2. 회장은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이 법인의 제반 운영을 총괄한다.

제 20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21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각 지부 정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은 정회원 20인당 1인으로 하고, 각 지부에서 정회원이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다.

제 22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임원보선의 경우는 예외)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이 법인의 해산
6. 기타 중요사항

제 23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대의원에게 서면 또는 등록된 이메일로 통지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4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5 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요구한 때
 - ④ 재적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의 장을 지명한다.

제 26 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및 실행위원회

제 27 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5. 회장 및 실행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주요사항

제 28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2.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회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0 조 (이사회회의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31 조 (실행위원회)

1. 이사회는 이 법인의 주요 직임을 받은 자를 실행위원으로 임명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회장 중 한사람을 실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3. 실행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실무를 관장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32 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함.
 -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①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33 조 (재산의 관리)

1. 제31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4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35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부금, 회원의 회비, 사업수익, 재산의 과실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36 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37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38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39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0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이 법인 설립자
 - ② 이 법인의 임원
 -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④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 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41 조 (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41 조의 2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이 법인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2월 28일까지 공개한다.

제 7 장 보 칙

제 42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서울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 44 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5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6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국민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및 재산귀속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 47 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임기
이사장	대천덕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하사미리 산7번지 예수원	예수원 증경원장	4년
이 사	권봉태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7-1	금화제일교회 목사	4년
이 사	김준곤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52-13	대학생 선교회 총재	4년
이 사	문선재	서울 송파구 송파동 141-29 현대아트빌리지 307호	강원대학교 총장	4년
이 사	정근모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A 85동 705호	아주대학교 교수, 원자력 대사	2년
이 사	서철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금호아파트 다동 311호	충신대학 교수	2년
이 사	고왕인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3차 26-1002	도서출판「무실」대표	2년
이 사	원동연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391번지 타운하우스 6-202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실장	4년
이 사	김경천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027-1 우성아파트 11동 403호	부산대학교 교수	2년
이 사	조성표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0B 2L 청산맨션 103동 503호	경북대학교 교수	2년
감 사	박인용	서울 서초구 도곡동 우성아파트 15동 507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	2년
감 사	장갑덕	대전시 유성구 궁동 404-8	과학원교회 목사	1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93년 8월 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정 기 예 금	1	50,000,000원	
합 계		5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 산 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 가 액	비 고
정기 예금	대동은행 복현동 지점				50,000,000원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8년 2월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장기우대 공사채 2호 (거취식)	1	50,000,000원	
합 계		5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 산 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 가 액	비 고
장기우대 공사채 2호(거취식)	한국투자 신탁은행 동대문지점				50,000,000원	